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72
----------	-------

발의연월일 : 2026. 9. 14.

발 의 자 : 송옥주 · 윤준병 · 황명선
이상식 · 임미애 · 문대립
한민수 · 전종덕 · 주철현
김준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 자조금 하나만 설치할 수 있지만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로 나뉘어서 설치할 수 있게 함. 토종닭은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인지도가 달라서 육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우와 육우처럼 일반 육계와 토종닭을 구분해서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진행 중이거나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논란을 방지하고,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우와 육우를 별도로 분리하여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축산물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서 불공정행위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축산물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육우를 구분하여”를 “육우를, 닭고기의 경우에는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로 한다.

제2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수급조절 등) ① 관리위원회는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성된 자조금의 범위에서 축산업자 간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에 대해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출하조절(이하 “수급조절”이라 한다) 등을 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매·비축한 축산물의 판매대금을 자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수급조절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의결 및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자

문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수급조절의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생략)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 ----- ----- <u>육우를, 닭고기의 경우에는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23조의2(수급조절 등) ① 관리위원회는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성된 자조금의 범위에서 축산업자 간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에 대해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출하조절(이하 “수급</u>

조절”이라 한다) 등을 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매·비축한 축산물의 판매대금을 자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수급조절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 의결 및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자문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수급조절의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